

감 사 기 록 카 드

6. 감사제목(처분일) : 입양기관 특별감사 ('08.11.20)

감사기간 : 2008. 7. 7. - 7. 18 (10일간)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홀트아동 복지회	<p>1. 국외입양아동 후원금 처리 부적정</p> <p>○ 홀트아동복지회의 '07년 세입예산 총 31,162백만원 중 후원금이 4,148백만원(총 수입의 13.3%)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원금 중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이 3,730백만원(후원 총액의 90%)에 이르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07년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금 수입 내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322 818 1196 1023"> <thead> <tr> <th colspan="2">합계</th> <th colspan="3">국내후원금</th> <th colspan="4">국외기부금^{주)}</th> </tr> <tr> <th>일반 후원금</th> <th>지정 후원금</th> <th>계</th> <th>일반 후원금</th> <th>지정 후원금</th> <th>계</th> <th>입양 후원금</th> <th>일반 후원금</th> <th>지정 후원금</th> </tr> </thead> <tbody> <tr> <td>3,730</td> <td>418</td> <td>1,981</td> <td>1,668</td> <td>313</td> <td>2,167</td> <td>1,089</td> <td>973</td> <td>105</td> </tr> </tbody> </table> <p>주) 국외 후원금의 경우 “기부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상 “후원금”에 해당</p> <p>-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2의 규정에 후원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비영리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조건없이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입양에 따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입양후원금은 사업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함.</p>	합계		국내후원금			국외기부금 ^{주)}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계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계	입양 후원금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3,730	418	1,981	1,668	313	2,167	1,089	973	105	<p>○ 홀트아동복지회장은 향후 “입양기부금”을 입양알선비용 수입항목에 포함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주의)</p>	<p>○ '08년도까지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하였던 입양후원금(기부금)을 '09년부터 “입양알선비용”으로 예산항목 변경하여 편성</p>	
합계		국내후원금			국외기부금 ^{주)}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계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계	입양 후원금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3,730	418	1,981	1,668	313	2,167	1,089	973	105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 입양아동 1인당 입양후원금 평균 : 미주지역 \$2,800, 유럽 지역 \$2,500</p> <p>○ 그러나 홀트아동복지회가 2007년 국외로 입양된 458명의 아동에 대하여 국외협력기관으로부터 정액금액으로 수수한 1,088백만원을 일양알선 비용의 사업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후원금으로 처리하였음.</p>			
<p>보건복지가족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p>	<p>2.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운영 부적정</p> <p>○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 1월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아동복지팀-4351, 2006.12.13)를 도입하여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기관에 입소한 날로부터 5개월 동안은 우선적으로 국내입양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p> <p>- 따라서 입양기관은 동 기간중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동 제도의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상담실적, 정보제공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p> <p>※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여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 미숙아 등)은 예외로 함.</p> <p>○ 그러나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 우선추진 기간중 국내입양은 시도하지도 않고 국외입양을 추진하고, 국외에 입양된 아동의 국내입양 추진 기록을 유지</p>	<p>○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p> <p>-입양기관이 인수한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독점을 차단하고 입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해외이주허가시 국내입양을 추진한 실적을 함께 첨부하는 등으로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p>	<p>○ '09년부터 모든 입양아동을 국내입양대상 아동으로 선정하여 입양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음.</p> <p>- 또한 Home visit record 에 이를 기록하여 어느 가정에 아동을 선보였는지 기록을 남겨 관리할 예정 (09.3.이후 인수아동부터 적용)</p> <p>○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임(입양특례법 개정안)</p>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하지 않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2007. 12월 및 2008.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중에 국외에 입양된 153명중 139명(90.8%)은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중에 국내입양 추진기록도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외입양을 위한 성본 창설을 신청하였으며 - 대한사회복지회의 경우에도 2008. 4월에 국외이주허가된 아동 30명중 27명(90%)은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중에 국내입양 추진기록도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외입양 협력기관에 추천하였음. 	<p>바랍니다.(개선)</p> <p>○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장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을 우선추진하시고 국내입양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p>3. 입양관련 정보의 미공유 및 폐쇄적 운영</p> <p>○ 홀트아동복지회 등 4개 해외입양기관은 입양정보센터에 입양대상 아동의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여 입양기관, 입양인, 입양가족, 입양신청인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인수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양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음.</p> <p>-그러나 '08. 6. 30일 현재 입양대기아동 1,410명 보다 국내입양을 신청한 대기자 수가 1,969명으로 559명이 더 많아 국내입양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입양대상아동 및 입양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입양관계자들 모두가 공유하여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함.</p>	<p>○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입양정보센터에 입양대기아동의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여 입양신청자의 정보접근 방안과 입양신청자에 대한 정보도 입양기관간 상호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p>○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중앙입양정보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09.8~11월) 운영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대상아동의 아동발생지역, 아동인수경위 등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등록, 공유하는 방안 검토 중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그런데도 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위 센터에 등록은 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성별, 나이 등 기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센터 등록 후 5개월이 지나면 입양여부에 관계없이 비공개 아동으로 처리하고 있고</p> <p>-입양기관이 입양신청자들의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수아동의 혈액형, 아동 및 친모의 건강상태, 출생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입양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입양기관 상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수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p> <p>-한편, 입양신청자의 정보가 입양기관간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입양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p> <p>○ 그 결과 입양기관이 인수한 아동 및 입양신청자에 대한 정보 미공유로 인해 입양정보센터를 통한 국내입양실적이 전무하는 등 입양업무의 투명성 결여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입양정보센터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입양정보센터 설립(입양기관 직원 파견근무) ◦ 2005 입양정보센터 전담직원 채용 ■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입양 정보,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입양인, 입양가족, 입양신청자 등에게 다양한 입양정보 제공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정동 11-3(두비빌딩 7층) </div>	<p>-입양정보센터의 역할 제고를 위해 입양기관이 인수한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 독점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p>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 인 력 : 5명(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4명)</p> <p>■ 예 산</p> <table border="1" data-bbox="331 480 1043 628">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세입·세출 결 산 액</th> <th colspan="2">주요 세입 항목별</th> </tr> <tr> <th>국고 보조금</th> <th>입양기관 전입금</th> </tr> </thead> <tbody> <tr> <td>2007년도</td> <td>213,641,229</td> <td>104,856,000</td> <td>75,253,000</td> </tr> <tr> <td>2008년도</td> <td>227,647,000</td> <td>115,741,000</td> <td>74,671,000</td> </tr> </tbody> </table> <p>■ 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아동의 한국이름, 생년월일, 입양날짜, 입양국, 양부이름이 수록되어 있는 '입양인검색시스템' 운영(1999년) ○ 입양대상아동의 통합정보제공을 위해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2006년) <p>■ 운영상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정보센터 설립의 법적근거 등이 미비하여 입양기관들이 동 센터에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없어 입양기관들의 적극성 결여로 입양아동 및 입양 대상아동에 대한 정보 수록 미비 ○ 입양기관(홀트, 대한, 동방, 한국)이 동 센터를 설립,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어 재정-운영의 독립성 저해 	구 분	세입·세출 결 산 액	주요 세입 항목별		국고 보조금	입양기관 전입금	2007년도	213,641,229	104,856,000	75,253,000	2008년도	227,647,000	115,741,000	74,671,000			
구 분	세입·세출 결 산 액			주요 세입 항목별														
		국고 보조금	입양기관 전입금															
2007년도	213,641,229	104,856,000	75,253,000															
2008년도	227,647,000	115,741,000	74,671,000															
보건복지가족부	<p>4. 비현실적인 국내·외입양 알선비용 책정</p> <p>○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입양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p>	<p>○ 아동청소년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국내·외입양 알선비용</p>	<p>○ 입양기관의 적정 입양수수료 단가 산정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임('09.8~)</p>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 보건복지가족부는 2001.9월 “적정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아동 1인당 국내입양 알선비용 2,198천원, 국외입양 알선비용 9,616천원으로 정하고 있음.</p> <p>-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외 입양알선비용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은 입양알선비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받아야 함.</p> <p>○ 그러나 2001.9월 이후 7년이 경과한 2008.7월 현재까지 국내·외입양 알선비용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p> <p>- 국내입양의 경우, 매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입양알선비용으로 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을 기피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p> <p style="text-align: center;"><홀트아동복지회가 산출한 국내입양 알선비용 내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31 1013 1198 1120"> <thead> <tr> <th>합계</th> <th>인건비</th> <th>양육비</th> <th>의료비</th> <th>절차비</th> <th>운영비</th> <th>홍보비</th> </tr> </thead> <tbody> <tr> <td>4,998^{주)}</td> <td>2,040</td> <td>1,251</td> <td>430</td> <td>617</td> <td>291</td> <td>369</td> </tr> </tbody> </table> <p>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입양 알선비용 2,198천원보다 2,800천원 많게 산출</p> <p>- 국외입양의 경우,</p> <p>· 홀트아동복지회는 2007.7.1일 국외협력기관과 협약을 변경하여 동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를이상으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인상하였고,</p>	합계	인건비	양육비	의료비	절차비	운영비	홍보비	4,998 ^{주)}	2,040	1,251	430	617	291	369	<p>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p> <p>-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받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선)</p>		
합계	인건비	양육비	의료비	절차비	운영비	홍보비												
4,998 ^{주)}	2,040	1,251	430	617	291	369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 data-bbox="369 341 1021 373"><국외입양 수수료 인상 현황 : 홀트아동복지회></p> <table border="1" data-bbox="306 395 1200 715"> <thead> <tr> <th>인상 일자</th> <th>국별</th> <th>인상전</th> <th>인상후</th> <th>인상금액</th> <th>초과금액^{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06.7.1</td> <td>미국</td> <td>\$8,200</td> <td>\$9,000 (9,135천원)</td> <td>\$800</td> <td>해당없음</td> </tr> <tr> <td>유럽</td> <td>\$8,200</td> <td>\$8,700 (8,830천원)</td> <td>\$500</td> <td>"</td> </tr> <tr> <td rowspan="2">07.7.1</td> <td>미국</td> <td>\$9,000 (9,135천원)</td> <td>\$11,000 (11,165천원)</td> <td>\$900 (913천원)</td> <td>1,549천원</td> </tr> <tr> <td>유럽</td> <td>\$8,700 (8,830천원)</td> <td>\$10,700 (10,700천원)</td> <td>\$500 (500천원)</td> <td>1,084천원</td> </tr> </tbody> </table> <p data-bbox="311 724 1205 932">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국외입양알선비용 9,616천원보다 초과금액 · 대한사회복지회는 '07년도 국외협력기관으로부터 입양수수료 이외에 발전기금 등을 받고 있으며 동 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해외협력기관과 협약에 따라 그 내용을 결정하고 있음.</p> <p data-bbox="376 979 1126 1011"><'07년 국외입양 아동1인당 알선비용 : 대한사회복지회></p> <table border="1" data-bbox="320 1043 1193 1334"> <thead> <tr> <th>구분</th> <th>입양 수수료</th> <th>기부금</th> <th>의료 기부금</th> <th>발전기금</th> <th>호송자 기부금</th> <th>항공료</th> <th>합 계</th> <th>초과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미국</td> <td>6,573</td> <td>4,967</td> <td>200</td> <td>2,500</td> <td>300</td> <td>1,800</td> <td>16,340\$ (15,326천원)</td> <td>5,710천원</td> </tr> <tr> <td>미국 (CHSFS)</td> <td>6,573</td> <td>4,967</td> <td>200</td> <td>760</td> <td></td> <td></td> <td>12,500\$ (11,725천원)</td> <td>2,109천원</td> </tr> <tr> <td>캐나다</td> <td>7,400</td> <td>6,600</td> <td>800</td> <td>4,500</td> <td></td> <td>2,500</td> <td>22,300C\$ (20,070천원)</td> <td>10,454천원</td> </tr> <tr> <td>스웨덴</td> <td>6,000</td> <td>4,000</td> <td>200</td> <td>1,800</td> <td></td> <td></td> <td>12,000Euro (19,940천원)</td> <td>10,324천원</td> </tr> </tbody> </table> <p data-bbox="324 1343 1039 1375">※ 국외협력기관 미국 CHSFS의 경우 주로 장애아동을 입양</p>	인상 일자	국별	인상전	인상후	인상금액	초과금액 ^{주)}	06.7.1	미국	\$8,200	\$9,000 (9,135천원)	\$800	해당없음	유럽	\$8,200	\$8,700 (8,830천원)	\$500	"	07.7.1	미국	\$9,000 (9,135천원)	\$11,000 (11,165천원)	\$900 (913천원)	1,549천원	유럽	\$8,700 (8,830천원)	\$10,700 (10,700천원)	\$500 (500천원)	1,084천원	구분	입양 수수료	기부금	의료 기부금	발전기금	호송자 기부금	항공료	합 계	초과 금액	미국	6,573	4,967	200	2,500	300	1,800	16,340\$ (15,326천원)	5,710천원	미국 (CHSFS)	6,573	4,967	200	760			12,500\$ (11,725천원)	2,109천원	캐나다	7,400	6,600	800	4,500		2,500	22,300C\$ (20,070천원)	10,454천원	스웨덴	6,000	4,000	200	1,800			12,000Euro (19,940천원)	10,324천원			
인상 일자	국별	인상전	인상후	인상금액	초과금액 ^{주)}																																																																								
06.7.1	미국	\$8,200	\$9,000 (9,135천원)	\$800	해당없음																																																																								
	유럽	\$8,200	\$8,700 (8,830천원)	\$500	"																																																																								
07.7.1	미국	\$9,000 (9,135천원)	\$11,000 (11,165천원)	\$900 (913천원)	1,549천원																																																																								
	유럽	\$8,700 (8,830천원)	\$10,700 (10,700천원)	\$500 (500천원)	1,084천원																																																																								
구분	입양 수수료	기부금	의료 기부금	발전기금	호송자 기부금	항공료	합 계	초과 금액																																																																					
미국	6,573	4,967	200	2,500	300	1,800	16,340\$ (15,326천원)	5,710천원																																																																					
미국 (CHSFS)	6,573	4,967	200	760			12,500\$ (11,725천원)	2,109천원																																																																					
캐나다	7,400	6,600	800	4,500		2,500	22,300C\$ (20,070천원)	10,454천원																																																																					
스웨덴	6,000	4,000	200	1,800			12,000Euro (19,940천원)	10,324천원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보건복지가족부	<p>5. 입양아동에 대한 장애 판정 기준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년 시·도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외 입양 실적 등을 취합하여 입양관련통계를 생산, 대내외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입양 장애아동 통계는 입양기관이 보고한 국외입양 장애아동수를 취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따라서 입양 통계 생산시 수집시기, 수집기관, 조사대상, 집계방법 등을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통계로써 대외에 공신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국외입양 장애아동 통계와 관련한 장애아동 판단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입양기관이 서로 상이한 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중에 국외입양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제출한 진단서를 검토하여 관행적으로 장애아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입양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는 국외입양 장애아동 통계는 입양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실제 국외입양시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통계이나 일반적인 장애아동으로 보기 곤란한 친모의 음주흡연이나 입양대상 아동의 수술흔적 및 저체중 등을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음. ○ 그 결과,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중에 국외입양을 허가한 장애아동은 총 145명에 불과함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장애아동으로 분류하는 일이 없도록 입양아동에 대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장애 판정기준’을 우선 적용 판단 - 미비한 부분은 의사 소견서 등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 예정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국외입양 장애아동 통계는 500명으로 대외에 공표되어 국외입양아동 총1,264명의 39.5%인 500명이 장애아동이라는 통계가 생산되고 있어 입양통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p> <p>※ 2007년 장애아동 국외입양 허가 현황 : 145명(홀트아동복지회 107명, 동방사회복지회 19명, 대한사회복지회 19명)</p>																					
보건복지가족부	<p>6. 해외입양아동 호송업무 등 부적정</p> <p>○ 입양기관은 아동의 권익 신장을 위해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호송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양부모가 아동을 호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아동호송을 실시하여야 함.</p> <p>○ 그러나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부모에 의한 호송비율이 '07년 45.4%, '08년 상반기 42.7%로 상당수가 아동양육경험이 없는 해외유학생 등 에스코트에게 호송을 맡기고 있으며,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입양아동 호송 현황 : 홀트아동복지회></p> <table border="1" data-bbox="309 1088 1198 126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합 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에스코트</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양부모</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위탁모</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기타</th> </tr> </thead> <tbody> <tr> <td>'07년 1~12월</td> <td>458명</td> <td>225명</td> <td>208명</td> <td>4명</td> <td>21명</td> </tr> <tr> <td>'08년 1~ 6월</td> <td>269명</td> <td>146명</td> <td>115명</td> <td>-</td> <td>8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1.1일부터 12.31일까지 해외입양 아동 호송을 맡긴 에스코트 225명(미국 207명, 유럽 18명) 전원으로부터 일률적으로 1인 	구 분	합 계	에스코트	양부모	위탁모	기타	'07년 1~12월	458명	225명	208명	4명	21명	'08년 1~ 6월	269명	146명	115명	-	8명	<p>○아동청소년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입양아동 호송시 양부모 호송 비율을 높이거나 입양기관의 전문 인력이 호송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대상국이 호주, 스웨덴의 경우 양부모가 의무적으로 호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부모의 호송비율(70%~80%)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양부모가 부득이 오지 못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호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외입양아동 자체 인도계획' 수립 요청 통보(09.8월) 	
구 분	합 계	에스코트	양부모	위탁모	기타																	
'07년 1~12월	458명	225명	208명	4명	21명																	
'08년 1~ 6월	269명	146명	115명	-	8명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당 450,000원씩 총101,250천원의 후원금을 징수하였음.</p> <p>○ 대한사회복지회의 경우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부모에 의한 호송비율이 '06년 268명(58.9%), '07년 190명(65.7%), '08년 상반기 117명(69.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입양아동 호송 현황 : 대한사회복지회> <table border="1" data-bbox="309 596 1196 868">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양부모</th> <th>직원</th> <th>위탁모</th> <th>해외협력기관</th> <th>에스코트</th> </tr> </thead> <tbody> <tr> <td>'06년 2~12월</td> <td>455명</td> <td>268명</td> <td>15명</td> <td>2명</td> <td>19명</td> <td>151명</td> </tr> <tr> <td>'07년 1~12월</td> <td>289명</td> <td>190명</td> <td>8명</td> <td>4명</td> <td>5명</td> <td>82명</td> </tr> <tr> <td>'08년 1~6월</td> <td>169명</td> <td>117명</td> <td>3명</td> <td>0명</td> <td>7명</td> <td>42명</td> </tr> </tbody> </table> <p>※ “에스코트”란 해외입양아동 호송인중 아르바이트 등의 비전문인 호송인을 총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2.1일부터 아동 호송자 모집시 호송자 1인당 왕복 45만원, 편도 30만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하여 '06년도 67,400천원, '07년도 36,750천원, '08.6월까지 18,750천원을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구 분	계	양부모	직원	위탁모	해외협력기관	에스코트	'06년 2~12월	455명	268명	15명	2명	19명	151명	'07년 1~12월	289명	190명	8명	4명	5명	82명	'08년 1~6월	169명	117명	3명	0명	7명	42명			
구 분	계	양부모	직원	위탁모	해외협력기관	에스코트																										
'06년 2~12월	455명	268명	15명	2명	19명	151명																										
'07년 1~12월	289명	190명	8명	4명	5명	82명																										
'08년 1~6월	169명	117명	3명	0명	7명	42명																										
대한사회복지회	<p>7.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p> <p>○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p>	○ 대한사회복지회 이사장은	○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당시 사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매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p> <p>- 그리고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 그런데도 대한사회복지회는 '06년도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소재 대지 787㎡ 등 2건을 매수하고,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3동 소재 대지 229㎡ 등 3건을 처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정관변경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p> <p>※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의 자산총액이 1,786,253.50원으로 표기되어 있음</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06.12.21일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충남 공주시 쌍신동 산 6-22, 6-34번지 소재의 토지(보전녹지지역, 40,422㎡)를 매입하면서 시설 신축시 검토하여야 할 해당지역의 노인요양 수요 및 시설충족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주시와 사전 협의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토지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 지역소재 공인중개사 1명의 인접토지 거래시세에 대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현 법인이사(홍종욱)와 특수관계인 그 동생(홍종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그 후 동 토지가 '06.12.4일 시설 신축이 불가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져 매입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08. 7월 현재 매매계약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임. 	<p>-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무총장(특1급) ○○ ○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경고)</p>	<p>무총장 ○○○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한편,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08.12.8. 경고장 발부</p>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대한사회복지회	<p>8.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손실액 변상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법인이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주무관청(강남구청)의 처분허가조건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런데도 대한사회복지회는 '06.12.19일 의정부시 의정부3동 368-3번지 소재 대지 229㎡ 및 주택 127,5㎡(가건물)을 매도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197,990천원 이상으로 처분해야 하나 - 기본재산 매각을 위한 공고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분할이 불가하여 상당기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회장 및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 재산을 감정평가액 이하인 190,000천원에 매도함으로써 법인의 기본재산에 7,990천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사회복지회 이사장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에 위반함으로써 기본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변상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변상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이사장 ○○○과 사무총장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변상명령서에 따라 '08.12.19. 우리은행에 5,327천원을 입금하여 변상 조치를 하였으며 동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보건복지가족부	<p>9. 입양아동 생계급여 집행 부적정</p>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생계급여는 수급자에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기초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생계급여를 집행하여야 함. - 그런데도 대한사회복지회는 '07년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입양대상 아동의 생계급여로 총 991,891천원(339,980원/인·월)을 지급받았으나, 생계급여(생계비·피복비·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443,140천원만 집행하였고 나머지 548,751천원은 생계급여와 무관한 보육료로 집행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입양아동 생계급여 집행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09 995 1205 1273">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생계급여 수령액 (A)</th> <th colspan="6">생계급여 집행 내역(B)</th> <th rowspan="2">집행 차액 (A-B)</th> </tr> <tr> <th>계(B)</th> <th>주부식비</th> <th>피복비</th> <th>의료비</th> <th>보육료</th> <th>기 타 (아동용품)</th> </tr> </thead> <tbody> <tr> <td>'07년도</td> <td>991,891</td> <td>1,256,529</td> <td>99,306</td> <td>45,556</td> <td>243,463</td> <td>813,369</td> <td>54,815</td> <td>△264,638</td> </tr> <tr> <td>'08.6월</td> <td>645,642</td> <td>973,951</td> <td>93,688</td> <td>37,109</td> <td>132,976</td> <td>627,913</td> <td>82,265</td> <td>△328,309</td> </tr> </tbody> </table> <p>※ 보육료의 대부분이 위탁모 인건비(50만원 내외/인·월)로 집행</p>	구 분	생계급여 수령액 (A)	생계급여 집행 내역(B)						집행 차액 (A-B)	계(B)	주부식비	피복비	의료비	보육료	기 타 (아동용품)	'07년도	991,891	1,256,529	99,306	45,556	243,463	813,369	54,815	△264,638	'08.6월	645,642	973,951	93,688	37,109	132,976	627,913	82,265	△328,309	<p>○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에 의거 강남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법인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지도·감독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입양대상 아동 생계급여를 목적외로 집행한 대한사회복지회에 엄중 주의조치하여 향후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토록하시기 바라며, -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과 법인의 일반사업의 		
구 분	생계급여 수령액 (A)			생계급여 집행 내역(B)							집행 차액 (A-B)																										
		계(B)	주부식비	피복비	의료비	보육료	기 타 (아동용품)																														
'07년도	991,891	1,256,529	99,306	45,556	243,463	813,369	54,815	△264,638																													
'08.6월	645,642	973,951	93,688	37,109	132,976	627,913	82,265	△328,309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법인의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그런데도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대상 아동의 생계급여 집행시 보조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법인의 일반사업 수입 및 지출내역과 혼용하는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p>수입 및 지출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p>		
보건복지가족부	<p>10. 직책수당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p> <p>○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예산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수표, 계좌입금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법인 정관, 자체 규정 또는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p>○ 그런데도 대한사회복지회는 '07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규정에 근거없이 비상임으로 선임된 이사장에게 정보비 명 	<p>○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대한사회복지회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 향후에는 동 규칙을 준수하여 재무회계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토록 조 	<p>○ 대한사회복지회는 이사장 직책수당 및 임시직 위로금 지출 등을 '09년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이사회 승인 후 집행하고 있음</p>	

관련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 (시정, 개선 등 내용)	조치결과	비고
	<p>목으로 월 2백만원의 직책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특히 '08.6.23. '08.7~12월분 이사장정보비 13,800천원을 선급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처리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에 계상하지도 아니한 채 법인의 기타 후생경비 항목에서 임시직 10명에게 회장의 지시로 명절 및 분기별 상여금 지급시 위로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였고 - 세출예산서에 이사회 회의비는 매회 1백만원 이내로 지출토록 계상하고 있으나 '06.2.28. 3,000천원, '07.1.31. 2,160천원, '07.5.31. 2,079천원, '07.9.30. 1,461천원을 이사회 식대비용 등으로 과다하게 집행하였고 특히, '06.2.28. 경비는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으며 - '07년도 세출예산서에 업무추진비 이외에 별도의 기밀비 항목으로 연간 2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경비의 성격이 업무추진비와 중복되고 현금으로 지출되어 그 사용목적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p>※ '07년도 기밀비 집행액 26,500천원은 각 부서 및 지방 순회시 격려금 형식으로 집행하였다고 주장</p>	<p>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p>		